

의안번호	제50호
의결 연월일	2022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9월 5일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
----------	----

발의연월일 : 2022년 9월 5일

발 의 자 : 이의영 · 박경숙 · 김꽃임 · 김국기 ·
이양섭 · 이종갑 · 임병운 의원(7인)

1. 제안 이유

- 도내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운용중인 조례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의 수정(안 제2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4조)
- 인용된 조례 명칭을 바르게 수정(안 제5조, 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예산조치 : 필요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와 협의

7. 입법예고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 <u>공공기관</u> ”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충청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u>공공기관</u> ”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 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	제4조(적용대상) ----- ----- ----- ----- ----- -----. 1.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 제6조 ----- -----

현행	개정안
제5조(지원 사항) ① 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경우에 장애인기업 우대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생략) 2.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 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제5조(지원 사항)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 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 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관 계 법 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4.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 시장정비사업자
6. 체인사업자 직·가맹점
7. 상점가진흥조합·상업협동조합의 조합원
8. ~ 14. (이하 생략)